보 건 소

#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**사 업 설 명 서**

보건행정과

- 720 -	
---------	--

# (양촌읍보건지소 운영) (P - 201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: 2020.01. ~ 2020.12. O 위 치: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68번길 37

O 사업대상: 업무대체 기간제근로자 2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양촌읍보건지소 진료환자 및 내소민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

보건소 접근성 강화로 신속한 민원응대 처리 및 시민 만족도 증가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4,500	2,000	4,000			△2,000	△2,50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비	4,500	2,000	4,000			△2,000	△2,50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양촌읍보건지소가 업무 중단되어 전문인력(방사선사1, 임상병리사1) 업무 공백 시의 대체인력이 불필요하여 예산 감액

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역보건법	제13조 및 제 24조 제1항			
근거내용	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국가와 시·도는 지역보건의료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				

#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_	-	-	-

#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O 보건증등 제증명 검사 전문인력(방사선사1, 임상병리사1)의 교육연가 등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사용하였으나,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보건지소가 업무 중단(2.24~5.5)되어 대체인력 인건비를 감액하고자 함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		
양촌읍 보건지소 운영	101-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	◎제증명 검사 업무 대행 인건비 •방사선실, 검사실 대체인력 100,000원*2명*10일	=	2,000	Δ2,000

# □ 사업 추진계획

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1~2020.12 : 양촌읍 보건지소 제증명 업무 및 민원실 운영

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방사선사 대체인력 : 20일 * 100,000원 = 2,000,000원 - 임상병리사 대체인력 : 30일 * 100,000원 = 3,000,000원	
2019년	- 방사선사 대체인력 : 22일 * 100,000원 = 2,200,000원 - 임상병리사 대체인력 : 20일 * 100,000원 = 2,000,000원	
2020년	- 방사선사 대체인력 : 0일 - 임상병리사 대체인력 : 2일 * 100,000원 = 200,000원	7월말까지 추진실적

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8년	5,000	5,000	-	0	
2019년	4,500	4,200	-	300	
2020년	4,000	200	-	3,800	7월말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행정과	양촌지소팀장 연은영	담당자	의료기술8급 김민정	전화	5490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# (5개 읍·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) (P - 201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: 2020.01. ~ 2020.12. O 위 치: 북부권 5개 읍면

O 사업대상 : 북부권 지역주민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의료취약지역인 5개 읍면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,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9,936	0	9,450	0	0	∆9,450	△9,936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비	9,936	0	9,450	0	0	∆9,450	△9,936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중단

#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	제14조 제1항 제7조
	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> 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)① 보건복지부장된   신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받도록 명할 수 있다. <[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> 제7조(응급처치 교육)② 시장은 공무원, 민방위대원, 형 및 생활안전,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	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 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양토예비군,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

#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5개 읍면 지역주민 대상 마을회관, 노인정 등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예산 감액하고자 함
- O 향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예산(국비보조사업)으로 사업 추진 예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5개 읍·면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	301-12 기타보상금	◎구조 및 <del>응급</del> 처치 교육	=	△9,450	

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5개 읍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: 28회 / 840명 - 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: 2회	
2019년	- 5개 읍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: 28회 / 626명	
2020년	- 5개 읍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: 0회 / 0명	7월말까지 추진실적

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8,880	8,880	_	0	
2019년	9,936	9,936	_	0	
2020년	9,450	0	-	9,450	7월말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행정과	의약관리팀장 박봉정	담당자	의료기술9급 권여민	전화	5056	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	--

# (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) (P - 201)

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2020년 1월 ~12월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대상 : 김포시민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김포시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심페소생술 능력 향상

O 예산요구 현황 (단위: 천원)

	2019년				,2019년 예산 대비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9,100	6,600	9,100	0	0	△2,500	△2,500	
국 비	3,300	3,300	3,300			_	-	
도 비								
시비	5,800	3,300	5,800	0	0	△2,500	△2,50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중단에 따라 국비보조사업 내시비율 조정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	제14조 제1항
근거내용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	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・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_	_	_	_	-	-	-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심정지환자 발생 시 5분 이내에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체험 및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
- O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의거한 법정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실시
- O 일반 시민들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증가로 인하여 법정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교육을 원하는 일반 시민까지 교육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	301-12 기타보상금	◎응급처치 교육 (6,600,000원 - 9,100,000원)	=	△2,500	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1 : 김포교육지원청, 여성가족과, 읍·면·동 교육안내 및 수요조사 협조요청

- 2020.10~2020.12 : 신청·접수 및 교육 실시

- 2021.01 : 교육 결과보고

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· 내용 : 법정교육 대상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· 실적 : 25회 888명	
2019년	-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· 내용 : 법정교육 대상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· 실적 : 25회 904명	
2020년	-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미실시	7월말 추실적

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8년	8,880	8,880	-	-	
2019년	9,100	9,100	-	-	
2020년	9,100	-	-	9,100	7월말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행정과	의약관리팀장 박봉정	담당자	의료기술 <del>9</del> 급 권여민	전화	5056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

# (감염병 예방활동) (P - 201~202)

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: 2020.01. ~ 2020.12. O 위 치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대상 : 김포시민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감염병 조기감지 및 유행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2019년					. 2019년 예사 대비	-1-		
구 분	구 분 <b>2019년</b> 예산액 (A) (E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7,045	12,855	22,105			∆9,250	5,81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7,045	12,855	22,105			Δ9,250	5,81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코로나19 대응 장기화로 「올바른 손씻기 조기교육 시범사업」 운영 불가에 따라 감액

#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64조 11호
근거내용	제64조(특별자치도·시·군구가 부담할 경비)다음 각 호의 경비 11.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가 실시	비는 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가 부담한다. 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	
신규사업[	] 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・출자 의회의결		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	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	

(단위: 천원)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		합계 = △9,250	
감염병 예방활동	201-01 사무관리비	©올바른 손씻기 조기교육 시범사업 물품 구입  •손소독제 : (5,000원*480개)-(5,000원*600개) = △6,000  •살균소독제 : (5,000원*720개)-(5,000원*2,000개) = △6,400  •손씻기 홍보 스티커 제작 = △1,000	
1020	301-12 기타보상금	◎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강사비 = △250	
	405-01 자산 및 물품취득비	◎손씻기 뷰박스 = △1,000	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-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  -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사업 미추진

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기간제근로자 사역 : 2명(검사실 요원, 특장차 소독요원) - 감염병 검체 운송 수수료 및 공문 발송 우편요금 등 - 감염병 역학조사용 노트북 교체 및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	
2019년	- 감염병 검체 운송 수수료 및 감염병 홍보용 공문 발송 우편요금 등 -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	
2020년	- 감염병 검체 운송 수수료 및 감염병 홍보용 공문 발송 우편요금 등 -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	7월말 추실석

##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 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 연 도 집 행 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978 34,080 33,102 2019년 7,045 6,915 130 7월말 기준 실 집행현황 2020년 22,105 8,666 13,439

부서명	보건행정과	감염병관리팀장 이청희	담당자	의료기술6급 이청희	전화	5036
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# (검사실 운영관리) (P - 202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감염병 및 진단검사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감염병 및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건강증진 및 건강유지에 기여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	2020년 예산액			2019년 교사 대비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7,050	20,450	14,250			6,200	13,40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7,050	20,450	14,250			6,200	13,40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검사업무 일시 중단으로 정도관리, 부품 교체 등 점검 사유가 빈번 하게 발생
- O 예비·신혼부부, 임산부 건강관리 검사건수 증가, 면역측정장비 신규교체로 자체검사 가능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폐수발생량이 증가함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 보건법	제4조 제2항 제7호 제11조 제5항
근거내용	감염병병원체 검사·보존·관리 및 약제 내성 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	

#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	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_	_	-	_	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검사업무 일시 중단으로 정도관리, 부품 교체 등 점검 사유가 빈번 하게 발생
- O 예비·신혼부부, 임산부 건강관리 검사건수 증가, 면역측정장비 신규교체로 자체검사 가능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폐수발생량이 증가함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		
		합계	=	6,200	
검사실 운영관리	201-01 사무관리비	.검사장비 유지비 : (795,000원X13종)-(450,000원X13종) .폐수처리 수수료 : (2,915,000원X1회)-(1,200,000원X1회)	= =	4,485 1,715	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1. : 예비부부·신혼부부,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계획

- 2020.01.~2020.12. : 예비부부·신혼부부,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추진

- 2020.01.~2020.12. : 제증명 검사, 결핵검사 지원

- 2020.03~2020.12. : 기관의뢰검사협조 (수도시설 종사자 건강검진, 학교급식기구 미생물검사)

#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<u> </u>	<u> </u>	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건강진단결과서 : 27,659건 - 건강진단서 : 1,213건 - 기타임상검사 : 83,963건	
2019년	- 건강진단결과서 : 28,802건 - 건강진단서 : 1,087건 - 기타임상검사 : 88,308건	
2020년	- 예비부부·신혼부부,임산부 건강관리 : 391건 (1건당 -21종검사 진행) - 제증명 검사 지원 : 51건 - 기타임상검사 : 11,500건	7월말 추/실적

#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7,050	6,918	-	132	
2019년	7,050	7,050	-	0	
2020년	14,250	12,918	-	1,332	7월말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 보건행정과	감염병관리팀장 이청희	담당자	의료기술8급 조선진	전화	5052
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# (한센인 의료지원) (P - 202)

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한센인 의료비지원 3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한센인 의료비지원으로 한센인 경제적 부담 경감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2019년			2020년 예산액					-1-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500	798	500			298	298	
국 비								
도 비	100	160	100			60	60	
시 비	400	638	400			238	238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경기도 건강증진과-11728(2020.07.23.) 2020년 한센인 의료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(1차)
- O 2020년 6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센의료지원 지급대상자 2명 전입으로 인한 한센인 의료지원비 증액 필요

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65조 제1호
근거내용	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·도가 부담한다. 1.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지원 경비의 일부	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		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	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		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O 한센인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, 근로능력부족 및 열악한 경제사정 등으로 환자를 위한 의료 지워이 필요함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한센인 의료지원	307-01 의료및구료비	◎한센인 의료비 지원 (798,000원-500,000원)	=	298	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6 : 상반기 한센인 의료비 지원금 지급 - 2020.12 : 하반기 한센인 의료비 지원금 지급

- 2021.01 ~ 2021.02 : 2019년 정산보고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한센인 의료비 지원 : 1명(18건)	
2019년	- 한센인 의료비 지원 : 1명(41건)	
2020년	- 한센인 의료비 지원 : 1명(15건)	7월말 추실적

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480	480	-	0	
2019년	500	500	-	0	
2020년	500	343	-	157	7월말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행정과	감염병예방팀장 장미경	담당자	간호6급 이명옥	전화	5038	
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	--

# (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응(성립전)) (P - 202~203)

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: 2020.2~2020.12. O 위 치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보건소 1개소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	421,000		194,000	5,000	222,000	421,000	
국 비								
도 비		397,000		170,000	5,000	222,000	397,000	
시비		24,000		24,000			24,00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하절기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구조 변경 등 환경 정비
-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구호 물품 구입
- O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방역 수요 증가

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64조 제11호
근거내용	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가 실시하는	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

#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<b>부</b>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■							

#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코로나19 환자 및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증상자 관리가 필요
- O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대응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 필요
- O 하절기 폭염 등 기온상승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운영방식 개선
- O 자가격리자의 출입통제로 인한 불편해소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구호물품 지원
- O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대책반(환자관리반, 선별진료, 자가격리반, 콜센터) 운영 경비 필요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		비고
		합 계	=	222,000	
신종 코로나	201-01 사무관리비	<ul> <li>○ 자동손소독기 임차료 : 88,000원*23대*3개월</li> <li>○ 검체 및 예방물품 운송수수료 : 65,000월*20회</li> <li>○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구입 : 50*50,000개</li> <li>○ 코로나19 긴급투입 방역 : 450,000원*200회</li> <li>○ 검체 등 운송수수료 : 70,000원*50회</li> <li>○ 선별진료소 구조변경비 : 7,000,000*1회</li> <li>○ 감염대책반 및 선별진료소 소모품 2,300,000원*5개월</li> </ul>	= = = = =	6,072 1,300 2,500 90,000 3,500 7,000 11,500	
바이러스 감염증	206-01 재료비	<ul><li>◎ 살균소독제 : 33,000원*566개</li><li>◎ 분무형 산균소독제 : 4,500원*2,100개</li></ul>	= =	18,678 9,450	
긴급대응	307-01 의료및구료비	◎ 코로나19 진단검사비 : 35,000원*1,800건	=	63,000	
	301-12 기타보상금	◎ 자가격리자 지원 구호물품구입 : 60,000원*100개	=	6,000	
	405-01 자산및물품취득비	<ul><li>◎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구입 : 2,750,000원*1개</li><li>◎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에어써큘레이터 : 250,000원*1대</li></ul>	= =	2,750 250	

# □ 사업 추진계획

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3~ :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

2020.06.~2020.12. : 선별진료소 운영 방식 개선 및 운영2020.06.26. : 임시사무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승인 요청

부서명 보건	<u></u>	담당자	보건7급 이명옥	전화	5036
--------	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(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(성립전)) (P - 203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: 2020.02.~2020.12 O 위 치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보건소 1개소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하절기 원활한 진료 업무를 위한 선별진료소 환경 개선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,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,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-	4,500				4,500	4,500	
국 비		4,500				4,500	4,500	
도 비								
시비								
기 타								

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대응 하절기(6~8월) 선별진료소 운영 시,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의료진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필요. 냉방기 긴급설치 지원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67조 7항			
근거내용	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격리소 ·요양소 또는 진료소 감염병관리시설 설치·운영에 드는 경비	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의			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	사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_	-	-	-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O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대응 하절기(6~8월) 선별진료소 운영 시,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의료진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필요, 냉방기 긴급설치 지원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3	비고		
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	자산 및 물품 취득비	ㆍ 선별진료소 냉방기 2대 : 4,500,000원	=	4,500	

# □ 사업 추진계획

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6. : 정수승인 및 배정 (회계과-19437, -21593)

- 2020.07. :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

- 2020.09. :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

# (암환자 지원사업(암환자 의료비 지원)) (P - 204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%(검진 후 암 진단자), 의료급여수급자, 폐암환자, 소아암환자 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암환자 가정의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제고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2019년 예산 대비		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공감(B-A)	비고
계	466,274	361,000	188,030	146,970		26,000	△105,274	
국 비	233,137	180,500	94,015	73,485		13,000	△52,637	
도 비	34,971	27,075	14,102	11,023		1,950	△7,896	
시비	198,166	153,425	79,913	62,462		11,050	△44,741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경기도 건강증진과-12302(2020.08.4.) 2020년 암관리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
- O 환자대비 예산부족으로 미지급 금액 발생

#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암관리법	제13조
근거내용	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느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	

#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<del>1</del> 부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기지방 투자심사 공유재산  정계획 부자심사 관리계획		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						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국가암 검진으로 암을 확진 받은 사람 중에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건강보험가입자, 의료급여수급권자, 폐암화자 및 18세미만 소아아동 암화자에 대한 의료비지원
- O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암환자이므로 장기간 미지급시 사망 후 지급
- O 적기의 의료비지원으로 암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업 효율성 제고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암환자의료비 지원	307-01 의료 및 구료비	◎ 암환자 의료비 지원 = 26,000	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1 : 추진계획수립

- 2020.01~2020.12 : 암환자의료비 신청 접수

- 2020.01~2020.12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의료비 중복지원 여부 확인

- 2020.01~2020.12 : 암환자의료비 지급

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암환자의료비 지원 : 228명 277,216,000원 건강보험(5대암종) 134명 132,161,240원, 의료급여수급자 50명 45,422,170원, 폐암 31명 37,137,550원 소아암 13명 62,495,040원	
2019년	암환자의료비 지원 : 267명 466,274,000원 건강보험(5대암종)151 명 177,329,370원, 의료급여수급자 47명 42,961,250원, 폐암 50명 65,938,650원 소아암 19명 180,044,730원	
2020년	암환자의료비 지원 : 151명 187,942,580원 건강보험(5대암종)89명 100,349,660원, 의료급여수급자 27명 22,761,820원, 폐암 30명 38,698,050원 소아암 5명 26,133,050원	7월말까지 추진실적

##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277,216	277,216	_	0	
2019년	466,274	466,274	-	0	
2020년	335,000	187,943	-	147,057	7월말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행정과	진료검진팀장 강순미	담당자	의료기술7급 이길준	전화	504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# (진료사업 운영) (P - 204)

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2020.01. ~ 2020.12. O 위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대상: 업무대체 기간제근로자 3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보건소 진료실, 물리치료실, 방사선실 내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여

시민 만족도 증가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		2019년 예사 대비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4,500	1,000	6,000	0	0	△5,000	∆3,50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비	4,500	1,000	6,000	0	0	△5,000	∆3,50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진료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전문인력(간호사1, 물리치료사1, 방사선사1) 업무 공백시 인력 대체가 불필요하므로 예산 감액함

#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역보건법	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
근거내용	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바. 지역주민에 대한 자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	

#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O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진료 및 민원업무를 최소화 하고 제증명 업무를 중단하여 진료사업 업무대행 인건비 금액을 감액하고자 함

(단위 : 천원)

사업	경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진료시 운영		101-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	◎진료사업 업무대행 인건비 •진료실·물리치료실·방사선실 대체인력 100,000원*10일 = 1,000	△5,000

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진료실적 17,445건, 물리치료 3,410명, 흉부방사선 촬영 35,186건, 업무대행 50회 -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: 34,526건 - 뇌병변 장애인 재활치료 : 77회 445명 - 요통재활치료 : 77회 739명	
2019년	- 진료실적 16,440건, 물리치료 4,106명, 흉부 방사선 촬영 33,341건, 업무대행 42회 -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: 36,543건 - 뇌병변 장애인 재활치료 : 98회 508명 - 요통재활치료 : 98회 575명	
2020년	- 진료실적 10,886건, 물리치료 510명, 흉부 방사선 촬영 6,065건, 업무대행 2회 -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: 10,754건 - 뇌병변 장애인 재활치료 : 10회 54명 - 요통재활치료 : 10회 66명	7월말까지 추진실적

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8년	5,000	4,650	-	350	
2019년	4,500	4,200	-	300	
2020년	6,000	200	-	5,800	7월말 기준 실 집행현황

- 5		<u> </u>					
	부서명	보건행정과	진료검진팀장 강순미	담당자	의료기술8급 김재영 간호8급 감가현 의료기술9급 이지혜	전화	5045 5050 5051

# (민원실 운영) (P - 204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: 2020.01. ~ 2020.12. O 위 치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대상: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1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연차 유급휴가(10일) 발생에 따른 연차휴가 수당 지급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처워)

	2019년	2020년 예산액					2019년 예사 대비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14,037	26,921	26,121	0	0	800	12,884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14,037	26,921	26,121	0	0	800	12,884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민원실 1년 이상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(10일) 발생에 따른 수당 증액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근로기준법	제60조 제1항
근거내용	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	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
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O 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(2019년 7월 ~ 2020년 9월) 중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 증액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민원실 운영	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◎ 민원실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• 연차휴가 수당 80,000원*10일	=	800	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7 ~ 2020.09 : 민원실 업무 수행

- 2020.09.28. : 기간제근로자 계약 만료 (퇴직금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)

- 2020.09.29. : 무기계약근로자 복직

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12	1 10 110(1 627)	
2018년	민원실 기간제 근로자(1명)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민원접수 37,307건 발급 35,427건	
2019년	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(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)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민원접수 43,282건 발급 39,967건	
2020년	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민원실 업무 수행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민원접수 5,709건 발급 6,456건(1~2월) 3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중단 관련 전화 민원 응대	7월말까지 추진실적

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4,756	4,524	-	232	
2019년	14,037	13,674	-	363	
2020년	26,121	17,535	-	8,586	7월말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행정과	보건행정팀장 김지영	담당자	행정8급 조상미	전화	5011	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	--

#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**사 업 설 명 서**

# 보건사업과

- 744	. –
-------	-----

#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(P - 206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: 2020.08. ~ 12.

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대상: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

#### 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,	2019년	<b>2020년 예산액</b>				2019년 예사 대비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	197,400	179,900			17,500	197,400	
기 금		98,700	89,950			8,750	98,700	
도 비		0	0			0	0	
시비		98,700	89,950			8,750	98,700	·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경기도 정신건강과-2592(2020.05.29.)호 관련 2020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변경내시 교부 - 2020년 기존 인력 5명 → 6명 (1명 충원)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- 제15조, 제82조 관한 법률(약칭:정신건강복지법)					
	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- 제6조					
	[법률]					
	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					
	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					
	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				
ין ולבר D	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					
근거내용	부담한다.					
	제82조(보조금 등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·					
	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					
	【조례】					
	제6조(운영비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					

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비대상

사업	 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중기지방 투자심사 용역과제 공유재산 정보화사업 민간위탁 재정계획 투자심사 심의 관리계획 타당성심사 의회동의				출연・출자 의회의결	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_	-	_

#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예산요구 필요성
  -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
- O 사업내용
  - 중증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
  -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

# 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			
기초정신건강복 지센터인력확충	307-05 민간위탁금	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(1명) · 기본급 : 2,500,000원*6월 · 사회보험료 : 200,000원*6월 · 퇴직적립금 : 167,000원*6월 · 여비 : 50,000원*6월	소계	= = =	15,000 1,200 1,000 300 17,500	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8. : 계획 수립

- 2020.09. ~ 2020.12. : 인력확보 및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, 등록관리 활성화

- 2020.12. : 사업결과보고 및 평가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: 2020년 신규사업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 분	주요사업내용 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기존인력: 5명 - 인력현황 · 2017년 :1명 / 2018년 : 3명 / 2019년 ~ 현재 : 1명	

#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179,900	93,646	0	86,254	7.15 기준 실 집행현황

#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(P - 206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2020.01. ~ 12.

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대상: 20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<b>2020년 예산액</b> 2010년 alk 다내			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	11,100	9,000			2,100	11,100	
기 금								
도 비		11,100	9,000			2,100	11,100	
시비			·					·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경기도 정신건강과 -1427(2020.04.24)호에 의거 정신건강복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변경내시 교부
- O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 처우개선비 부족분 지원

#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- 제3조						
느/1日경	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- 제5조						
	[법률]						
	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						
	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						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						
	노력하여야 한다.						
77111 O	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						
근거내용	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11.>						
	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						
	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						
	【조례】						
	제5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						
	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						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비대상

사업	성격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예산요구 필요 사유
  -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의 처우 개선

# 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시군 정신건강복지센 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정신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· 신규직원 6명*50,000원*7월	= =	2,100	

# □ 사업 추진계획

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2. : 2019년 예산계획수립

- 2020.01.~2020.12. :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

#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: 2020년 신규사업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 분	주요사업내용 (추진실적)	비고
E10000	- 지급기간 : 2020.01.01~2020.06.30	
2020년	- 지급건수 : 105건	

#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9,000	5,200	0	3,800	7.15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사업과	보건사업팀장 박임순	담당자	의료기술6급 박임순	전화	5027	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	--

#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(도비지원) (P - 206)

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2020. 01. ~ 12.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 :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126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를 통한 증상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,	2019년	2020년 예산액					2019년 예사 대비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-	86,920	153,060			△66,140	86,920	
국 비								
도 비	ı	43,460	76,530			∆33,070	43,460	
시비	-	43,460	76,530			∆33,070	43,46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경기도 정신건강과-2855(2020.06.08)호 관련, 예산 66,140천원 감액 변경내시 교부
- 지원대상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자 축소(외래진료 치료비 소득제한 없이 지원 →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자)

#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	- 제80조 - 제4조 - 제11조
근거내용	【법률】 제80조(비용의 부담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 【조례】 제4조(비용지원)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제11조(부담의 경감 등)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·보조나 그 밖에 필요함	·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##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응 촉진
- O 사업내용
  -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전담인력 1명 인건비
  -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, 외래진료 치료비 등 지원

#### □ 시업비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		비고
정신질환자 치료지원 (도비지원)	307-05 민간위탁금	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 인건비 · 기본급 : 2,500,000원*1명*9월 · 수당 : 300,000원*1명*9월 · 사회보험료 : 200,000원*9월 · 퇴직적립금 : 200,000원*9월 · 여비 : 200,000원*9월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: 446,980*126명	= = = = = _ _ _ _ _ _ =	22,500 2,700 1,800 1,800 1,800 30,600 56,320	∆66,140

#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1. :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수립

- 2020.01.~2020.12. : 정신질환자 치료지원(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메뉴얼 6월 배포)

- 2020.06.~2020.12. : 상하반기 결과보고 및 평가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: 2020년 신규 사업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채용기간 : 2020.04.01~2020.12.31 - 채용인원 : 1명 - 경기도 정신질환지 치료비지원 건수 : 3건	7.15.까지 추진실적

부서명 5	보건사업과	보건사업팀장 박임순	담당자	간호6급 신수정	전화	5028
--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(성립전) (P - 207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2020.07. ~ 12.

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대상: 만19세~34세 경기도 주민등록 되어 있는 청년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 구축, 조기발견 및 개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.J.=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	149,240				149,240	149,240	
기 금		74,620				74,620	74,620	
도 비		11,193				11,193	11,193	
시비		63,427				63,427	63,427	
기 타								

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경기도 정신건강과-1315(2020.04.22.)호에 의거 2020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사업 확정 내시 교부
- O 청년들의 심리·정서 문제에 조기개입, 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	제4조, 제64조, 제80조				
	관한 법률(약칭:정신건강복지법)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- 2	제11조				
		제6조				
	【법률】					
근거내용	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					
	신질환을 예방·치료하며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					
	지도·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				
	제64조(외래치료 지원 등)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					
	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					
	제80조(비용의 부담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					
	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					
	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			
	【도조례】					
	제11조(부담의 경감 등) 도지사는 정신질환과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					
	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·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				
	【시조례】					
	제6조(운영비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형	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				

##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비대상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_	_	_	-	-	-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예산요구 필요성
  - 청년 정신과치료 및 심리상담,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 실태는 미흡
  - 20대 청년 전체의 7%가 심한 우울증, 8.6%가 심한 불안증, 22.9%는 최근 6개월 이내 자살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(20대 청년 심리·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)
- O 사업내용
  -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
    - ·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1인당 36만원/년 한도 지원
  - 청년 마인드링크 사업
    - · 정신건강전문요원(2명) 배치하여 청년정신건강 상담, 고위험군 청년 발굴 및 예방

## 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		
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	307-05 민간위탁금	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    · 기본급 : 2,500,000원*2명*6월     · 수당 : 710,000원*2명*6월     · 사회보험료 : 285,000원*2명*6월     · 퇴직적립금 : 200,000원*2명*6월     · 시간외수당 : 100,000원*2명*6월     · 여비 : 200,000원*2명*6월     · 여비 : 200,000원*2명*6월     · 조기정신증 전별검사지 제작 : 1,000,000원*2회     · 조기정신증 책자제작 : 5,000원*2,000부     · 조기정신증	= = = = = = = = = = = = = = = = = = = =	30,000 8,520 3,420 2,400 1,200 2,400 47,940 2,000 10,000 2,500 800 1,200 73,800 900 100	
		소계	=	101,300	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7. : 사업계획 수립

- 2020.08.~2020.12. : 청년정신질환사업 및 치료비지원

- 2020.12. : 사업결과보고 및 평가

부서명	보건사업과	보건사업팀장 박임순	담당자	의료기술6급 박임순	전화	502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#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(신규) (P - 207)

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: 2020.08. ~ 12.

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대상 :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력 1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김포시 자살률 감소를 위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

#### 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,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
구 분 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	
계		17,500				17,500	17,500	
기 금		8,750				8,750	8,750	
도 비		0				0	0	
시비		8,750				8,750	8,75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경기도 정신건강과 -3007(2020.06.11.)호에 의거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확정내시 교부 O 자살률 감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전문 인력 충원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- 제4조
	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 - 제12조
	[ [ 법률]
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
	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.15>
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
771110	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
근거내용	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
	2017. 2. 8., 2019. 1. 15.>
	【조례】
	제12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
	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비대상

사업	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		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	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ı	-	-	-		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예산요구 필요성
  - 김포시의 자살률 감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전문인력 확충
- O 사업내용
  - 자살시도자, 유가족, 자살생각자 등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등록
  -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

#### □ 시업비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기초정신건강복 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	307-05 민간위탁금	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인건비 · 기본급 : 2,500,000원*6월 · 사회보험료 : 200,000원*6월 · 퇴직적립금 : 167,000원*6월 · 여비 : 50,000원*1월	= = = =	15,000 1,200 1,000 300	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8. : 계획 수립

- 2020.09. ~ 2020.12. : 인력확보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, 사례관리

- 2020.12. :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

부서명	보건사업과	보건사업팀장 박임순	담당자	의료기술6급 박임순	전화	502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#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-통합건강증진사업 (P - 207~208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108

O 사업규모: 9개 건강증진사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, 개발 추진함으로써 편성된 9개의

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행태 및 인식개선을 통한 건강위험요인 감소 및 삶의 질 향상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	
계	559,232	498,572	498,572	-	-	-	△60,660		
국 비	279,616	249,286	249,286	-	ı	-	△30,330		
도 비									
시비	279,616	249,286	249,286	-	1	_	△30,330		
기 타	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2020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발생으로 통계목 변경
- 총 예산액 변경없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(행사운영비) 17,200천원 및 (행사실비지원금) 6,000천원 총 23,200천원을 인력운영비(무기계약근로자보수)와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
- \* 코로나-19 획산방지를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시업 비대면시업 운영중으로 행사운영비, 행사실비지원금 사용불가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민건강증진법	제19조(건강증진사업등)
근거내용	제19조(건강증진사업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학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②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후 1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. 영양관리 3. 구강건강의 관리 4.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.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·연구 6.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	한다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_	-	_	-	-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기존 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질병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 도모
  -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 편성된 사업 -
    - ①신체활동사업 ②절주사업 ③영양, 비만사업 ④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⑤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
    - ⑥구강보건사업 ⑦치매조기검진사업 ⑧한의약건강증진사업 ⑨모자보건사업

## 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	비고
		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		=	0	
	201-03 행사운영비	구강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		=	0	△17,200
	0,1 도 0 리	한방기공체조대회운영		=	0	
	301-09 행사실비지원금	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간담회 운영		=	0	Δ6,000
		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				
		· 교육용 책자 구입 2,000원*5,000부 · 홍보물구입 2,500원*1,976개		=	10,000 4,940	
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(통합건강증진 사업)	201-01 사무관리비	구강보건사업 운영			4,000 6,000 1,200 15,000 1,000 1,500 2,700 2,250 350 2,000 3,000	
		·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: 1,000원*3,000개 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 · 활력충전프로그램 운영비 : 100,000원*4회*8월 · 재활사업 보장구 유지관리 : 100,000원*5회 · 재활사업 한파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: 1,000원*2,000개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훈련비		= = =	3,200 500 2,000 4,080	증 9,200
		· 교육비 : 240,000원*17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 · 홍보물품 구입 : 1,000원*1,650개		=	1,650	
		모자보건사업 운영 · 모유수유실 운영비 : 50,000원*12월 ·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및 안내문 제작 : 2,000원*4,000명 ·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비 : 300,000원*11월		= = =	600 8,000 3,300	
		통합건강증진달력제작 · 통합건강증진 건강달력제작: 2,000원*5,000부		=	10,000	
			소계	=	87,270	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인력운영비 (지역사회통합	101-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	· 2020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= 155,0	88 중 14,000
건강증진사업)	구기세탁근도자로구 		

※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(통합건강증진사업) 총498,572천원 = 사업비 357,484천원 + 인력운영비 141,088천원

##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9. :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

- 2019.11. : 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 - 2020.01. : 20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서 제출

- 2020.01.~2020.12. : 사업집행(통합건강증진사업비:357,484천원, 인력운영비: 141,088천원)

\* 코로나-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업무추진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그 <u>ㅂ</u>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 · 신바람건강체조마을 운영: 1,239 /16,300명  ·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: 380회/6,768명  · 생애주기별 절주사업:207회/28,544명  · 통합건강증진사업 캠페인 및 홍보: 5회/9,603명  · 생애주기별 영양관리, 영양상담실 운영, 요리교실운영: 80회/13,200명  · 건강한 돌봄 놀이터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: 138회/3,004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  · 고혈압·당뇨 이동교실: 72회 6,404명, 감사측정: 4,167건  ·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운영: 24회 878명 참여  · 고혈압당뇨병 표준화 교육: 25회/ 556명 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  ·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: 1,046명, 건강서비스: 5,064회, 자원연계 1,223명  · 활력충전 재활프로그램 운영: 48회 955명 참여  구강보건사업 운영  ·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불소도포: 6,941회/41,454명  · 어린이치과체험교실 및 학교구강보건실, 꾸러기이닦기교실 운영: 110회/2,904명  ·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: 47회/1,053명  ·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: 3,141회/10,960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  · 한방기증진사업 운영  · 한방기증진사업 운영  · 한방주종예방교실: 2회/281명  · 한방주종예방교실: 2회/281명  · 한방자연건강마음: 24회/564명  모자보건사업 운영  · 임산부 등록 및 관리: 3,375명  · 임산부 건강프로그램 운영: 164회/2,601명  · 임산부 건강프로그램 운영: 164회/2,601명  · 임산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: 9,403개	
2019년	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 · 신바람건강체조마을 운영 : 695회 9,404명  ·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: 332회 11,457명  · 생애주기별 절주사업 : 103회 17,399명  · 통합건강증진사업 캠페인 및 홍보 : 2회  · 생애주기별 영양관리, 영양상담실 운영, 요리교실운영 : 63회 5,200명  · 건강한 돌봄 놀이터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: 33회 424명	

	기사장의 가장 게이 가지 아이	I
	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	
	· 고혈압· 당뇨 이동교실 : 51회 926명, 검사측정 : 2,778건	
	·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운영: 15회 1,599명 참여	
	· 고혈압당뇨병 표준화 교육 : 30회 428명	
	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	
	ㆍ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: 1,127명, 건강서비스 : 2,393회, 자원연계 105명	
	· 활력충전 재활프로그램 운영 : 34회 672명 참여	
	구강보건사업 운영	
	·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불소도포 : 2,603회/19,518명	
	· 어린이치과체험교실 및 학교구강보건실, 꾸러기이닦기교실 운영 : 34회/2,299명	
	·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: 40회/364명	
	·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 : 158회/8,585 <b>명</b>	
	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	
	· 한방기공체조교실 : 656회/12,212명	
	· 한방육아교실 : 14회/189명	
	· 한방중풍예방교실 : 3회/69명	
	· 한방자연건강마을 : 8회/127명	
	모자보건사업 운영	
	· 임산부 등록 및 관리 : 1,479명	
	· 임산부 건강프로그램 운영 : 63회/521명	
	· 임산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 : 5,470개	
	코로나-19 예방 및 확산방지 비상근무	
	· 코로나-19의 지속적인 발생 및 장기화로 필수업무를 제외한 건강증진업무 중단	
	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-2(2020.1.29.)호"보건소 업무조정 및	
	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집중요청"	
	-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-896(2020.2.3.)호"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건강증진업무	
	잠정중단 등 협조요청"	
	- 경기도 북부보건위생과-2400(2020.2.4.)호"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관련	
	사업 및 자료요청 건 잠정중단안내	
	· 보건소 전직원 감염병 확산방지 업무수행	
	* 선별진료소 근무, 코로나-19 콜센터운영,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근무, 역학조사 등	
	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	
2020년	·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: 27회 848명	7.15일까지
_	· 댁사증후군관리사업 : 126명	추진실적
	· 생애주기별 영양관리, 영양상담실 운영 : 180명	
	· 건강증진센터운영 : 1,275명	
	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	
	·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: 1,129명, 건강서비스 : 874회, 자원연계 226명	
	구강보건사업 운영	
	·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불소도포 : 1,325회/4,756명	
	·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 : 229회/769 <b>명</b>	
	모자보건사업 운영	
	· 임산부 등록 및 관리 : 2,031명	
	○ 임산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 : 6,352개	

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					<u> </u>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544,411	544,411	0	0	
2019년	559,232	268,685	0	4,634	
2020년	498,572	215,000	0	283,572	7.1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#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-영양플러스사업 (P - 208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108

O 사업규모: 중위소득 80%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을 통하여 평생

건강관리를 위한 기반마련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2019년 교사 대비	,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134,930	160,280	160,280	-	-	-	25,350	
국 비	67,465	80,140	80,140	-	_	-	12,675	
도 비								
시비	67,465	80,140	80,140	-	_	_	12,675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2020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발생으로 통계목 변경
- O 총 예산액 변경없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사업) 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) 2,000천원 및 행사운영비 1,240천원 총 3,240천원을 인력운영비(무기계약근로자보수)로 통계목 변경
  - \* 코로나-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사업 운영중으로 행사운영비 사용불가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민영양관리법	제11조(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)
근거내용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 1. 영유아, 임산부, 아동, 노인,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 2.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집단급식소,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 3.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	-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	사?	전절차 이행여	녀부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##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2019년도부터 시군별 대상자 대비 적정예산 비율로 투입 될 수 있도록 예산 분리된 사업
- O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
- O 대상자별 월2회 각 가정으로 보충식품 지원, 영양교육 및 상담, 정기적 영양평가(신체계측 및 빈혈측정 등)

#### 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	201-01 사무관리비	영양플러스사업 운영	=	10,480	△2,000
(영양플러스 사업)	201-03 행사운영비	영양플러스사업 요리실습 재료구입	=	0	△1,240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인력운영비 (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(영양플러스 사업))	101-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	· 2020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= 40,600	증 3,240

※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사업) 총160.280천원 = 사업비 122.920천원 + 인력운영비 37.360천원

#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1. : 식품공급업체선정(공개경쟁입찰)

- 2020.01.~ 02. : 2019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

- 2020.01. ~ 2020.12. :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·유아 대상 월별 보충식품지원, 영양교육 및 상담, 정기적

영양평가 등 영양플러스사업 추진

- 2020.04. ~ 2020.12. : 분기별 사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

- 2020.12. : 사업결과보고 및 평가 제출

\* 코로나-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업무추진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보 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· 영양플러스시업 사후 빈혈 개선율 73% 달성 · 영양플러스시업 보충식품공급 월 2회배송, 24회/2,520명 · 영양플러스시업 교육 및 평가 2,232명 · 영양플러스시업 보충식품이용 영양간식실습 4회	
2019년	· 영양플러스사업 사후 빈혈 개선율 73.2% 달성 ·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공급 월 2회배송, 24회/2,570명 · 영양플러스사업 교육 및 평가 2,400명 ·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이용 영양간식실습 2회	
2020년	·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공급 월 2회배송, 12회/1,440명 · 영양플러스사업 교육 및 평가 730명 ·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이용 영양간식만들기 비대면 교육 140명	7.15일까지 추진실적

# O 최근3년 집행현황

O 최근 3인 합성	727				(단위 : 천원)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544,411	544,411	0	0	'18년 예산현액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
2019년	134,930	133,936	0	994	'19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예산 분리
2020년	160,280	81,286	0	78,994	7.1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 보건	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	담당자	보건7급 함문선	전화	5016
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(P - 208~209)

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김포시 전지역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에게 금연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, 흡연예방 및 금연

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 및 금연환경조성사업 강화로

간접흡연 예방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	<b>2019년</b> 예산액		2020년 예산액					,
구 분	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267,020	220,308	227,208	24,000		△30,900	△46,712	
국 비	133,510	110,154	113,604	12,000		△15,450	△23,356	
도 비								
시비	133,510	110,154	113,604	12,000		△15,450	△23,356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경기도 건강증진과-11296(2020.07.17.시행) 관련, 예산 30,900천원 감액 변경내시 교부
- O 2020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발생으로 통계목 변경
- O 코로나-19 사태에 따른 금연사업 잠정 운영중단(행사운영비 사용불가 및 금연지도원 활동중단)
  -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행사실비지원금 4,000천원을 인력운영비(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)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통계목 변경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민건강증진법	제8조, 제9조, 제9조의5, 제25조, 제26조				
	제8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	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				
	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·홍보하여야 한다.					
	제9조 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	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				
	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	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				
	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	A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			
	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					
근거내용	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					
- 기에 -	으로 지정할 수 있다.					
	제9조의5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<sup>9</sup>	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				
	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					
	제25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					
	1. 금연교육 및 광고,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 <sup>i</sup>	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				
	제2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	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				
	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	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				

##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_	-	_	_	_	-	_

##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
  - 이동금연클리닉, 야간금연클리닉 확대 운영
- O 간접흡연의 위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
  - 금연구역(공원, 버스정류소, 학교 등) 지정 및 금연표지판 설치
  -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안내판 설치
  -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지도·단속

## 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	201-03 행사운영비	· 유아대상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	=	0	△4,500
		·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 : 31,600원*50명	=	1,580	△1,920
	301-09 행사실비지원금	· 금연사업 간담회 및 행사 간식비 7,000원*13명*5회	=	455	△4,000 (인력운영비
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		소계	=	2,035	통계목 변경)
서비스		· 금연지도원 활동수당(야간) : 90,000원*90회*2명	=	16,200	
		· 금연지도원 활동수당(주간) : 60,000원*90회*2명	=	10,800	△18,480
	301-12 기타보상금	60,000원*116회*2명	=	13,920	Δ10,400
	기나모장금	소계	=	40,920	
		·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비	=	0	△6,000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인력운영비 (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)	101-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	· 2020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= 42,991	중 4,000

※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총220,308천원 = 사업비 181,317천원 + 인력운영비 38,991천원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 01. ~ 02. : 금연클리닉 정상 운영, 금연구역 지도·점검

- 2020. 02. ~ 05. : 코로나-19 확산으로 인한 금연사업(금연클리닉 등) 중단

- 2020. 06. : 금연클리닉 시간별 예약제로 대면상담 업무 재개(7~8명/1일)

- 2020. 07. : 금연클리닉 예약제 운영

- 2020. 08. : 금연상담사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, 이동·야간금연클리닉 확대 운영,

금연지도원 지도·점검 활동 재개

- 2020. 09. :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지도·단속 강화

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판 설치

- 2020. 12. : 2020년 금연사업 평가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: 1,979명 금연교육 : 19,687명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: 4,181개소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: 21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: 8개소(총 15개소)	
2019년	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: 1,846명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: 1,331명 금연교육 : 25,031명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: 6,824개소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: 18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: 13개소(총 28개소)	
2020년	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: 398명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: 189명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: 898개소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: 5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: 3개소(총 31개소)	7.15일까지 추진실적

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267,020	264,917	-	2,103	
2019년	267,020	263,024	-	3,996	
2020년	251,208	75,440	-	175,768	7.1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 보건사업과	보건사업팀장 박임순	담당자	행정9급 김민경	전화	5030
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구강보건사업 추진(P - 209)

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108

O 사업규모: 5,000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구강보건인식개선과 구강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바른 구강건강습관 형성 및 구강건강증진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	2019년	2020년 예산액					. 2019년 예사 대비	,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6,600	5,800	6,600			∆800	△80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비	6,600	5,800	6,600			△800	△800	
기 타								

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코로나-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사업 운영중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사용불가에 따른 사업비 반납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구강보건법	제7조 제2항		
근거내용	②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	, , <u> </u>		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	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_	-	-	-	-	

- O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교육, 스케일링, 불소용액양치, 불소도포 등 구강예방서비스 실시
- O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 제공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구강보건사업 (일반보전금)	301-09 행사실비보상금	·장애인치과 진료(의료진) 봉사자 급식 및 간담회 = 0	△800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2.~2019.12. : 2020년 구강 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

- 2020.02.~2020.02. : 2019년 구강 보건사업 결과보고 제출

- 2020.01.~2020.12. : 사업집행(구강보건 사업비:6,600천원)

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·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불소도포: 5,447회/41,326명 · 어린이치과체험교실 및 학교구강보건실, 꾸러기이닦기교실 운영: 43회/1,175명 ·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: 153회/9,465명 · 노인 구강보건 및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: 54회/1,412 <b>명</b>	
2019년	·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불소도포: 5,509회/42,232명 · 어린이치과체험교실 및 학교구강보건실, 꾸러기이닦기교실 운영: 51회/1,226명 ·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: 171회/12,200명 · 노인 구강보건 및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: 63회/1,502 <b>명</b>	
2020년	·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불소도포: 1,325회/4,756명 ·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: 53회/1,065명 · 구강검진: 34명	7.15일까지 추진실적

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12,655	8,868	예상금액	0	
2019년	6,600	6,600	0	0	
2020년	6,600	5,800	0	800	

부서명 보건	<u> </u> 건강증진팀	장 김애경 담당자	보건7급 함문선	전화	5016
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(신규) (P - 209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: 2020.08. ~ 12. O 위 치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지원인력: 4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을 한시적으로

지원함으로써 보건소 업무의 정상화 추진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0	0	0			45,196	45,196	
국 비	0	0	0			45,196	45,196	
도 비								
시비							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-5089(2020.07.13)호, 경기도 건강증진과-11099(2020.07.14)호에 의한 2020년 보건소 한시적인력 지원 사업(신규) 확정내시에 따른 45,196천원 예산편성

#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역보건법	제11조(보건소의 기능 업무)
	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① 보건소는 해당 지빙	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
	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	
	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	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
	가.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	
근거내용	나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	
	다.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	
	라. 여성 · 노인 ·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	·증진
	마.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	
	바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	l병관리에 관한 사항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		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	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_	-	-	-		

- O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최적화 된 민원응대를 위한 전문요원 배치
- O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보건소 업무 (모자보건 의료비 지원업무, 말라리아 신속진단)의 운영을 위한 인력 활용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(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)	101-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	보건소 한시인력 인부임(4명/5개월)     · 기 본 급 : 80,000원*4명*89일     · 주휴수당 : 80,000원*4명*17일     · 유급수당 : 80,000원*4명*5일     · 정액급식비 : 130,000원*4명*5월     · 명절수당 : 500,000원*4명*1회     · 4대보험료 등 : 40,120,000원*13%	= = = = = =	28,480 5,440 1,600 2600 2,000 5,076	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7. : 한시인력 지원사업 계획 수립

(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-5089, 경기도 건강증진과-11099, 경기도 건강증진과-12457호 관련)

- 2020.08. ~ 2020.12. :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소 한시적 전담요원 배치

부서명 보건사업과	건강증진팀장 김애경	담당자	의료기술6급 김애경	전화	5029
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# 치매안심센터 운영 (P - 209~210)

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사우중로 73번길 52

O 사업규모: 1개소(698.27㎡), 고촌읍 및 동지역 60세 이상 인구 56,177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환자와 가족의

삶의 질 향상

#### 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처워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609,135	253,265	338,410	△8,891		△76,254	∆355,870	
국 비	487,308	202,612	270,716	△7,100		△61,004	△284,696	
도 비	18,274	7,598	10,154	△268		△2,288	△10,676	
시비	103,553	43,055	57,540	△1,523		△12,962	△60,498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국도비 보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액 10%(126,912천원) 감액하여 변경 내시됨
- ○치매안심센터운영비 총 예산 1,142,213천원을 행정과 인건비 63%(720,000천원), 보건사업과(치매안심센터) 22%(253,265천원), 북부보건과 치매관리 사업비 15%(168,948천원)로 분리 편성하여 운영
- O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업무중단, 7월부터 비대면 업무중심 재개함에 따라 조기검진비, 인지프로그램 운영비, 행사운영비, 업무추진 여비 등 총 76,254천원 감액 편성함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치매관리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	치매관리법 제3조
근거내용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"치다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7	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	사	전절차 이행여	부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_	_	_	-	_	-	_

- O 치매조기검진 · 돌봄 · 치료 등 '통합관리서비스' 제공으로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 및 가족 부양부담 경감
- O 치매안심센터 청사 공공운영 및 전 시민대상 치매인식개선 도모
- O 치매고위험군 및 정상노인 대상 치매 예방관리·교육·홍보로 치매발생 감소 또는 지연

(단위: 천원)

편성목	사업명(통계목)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		
일반운영비	치매안심센터 운영 (사무관리비201-01)	·차량임대 및 일반수용비 ·가족지원 및 인지프로그램 운영 = ·치매사업 홍보물 및 인쇄비		69,657	△21,574
(201)	(공공운영비201-02)	·공공요금 및 제세금 ·시설 및 차량 유지 · 관리비	=	35,380	△9,700
	(행사운영비201-03)	·행사, 프로그램 운영	=	0	△5,720
여비(202)	(국내여비202-01)	·치매안심센터 여비	=	7,920	△7,920
일반보전금	(행사실비 지원금301-09)	·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1,000원 * 35명 * 100회 ·가족카페 운영 125,000원 * 12월 ·행사다과및급식비 350,000원 * 2회	=	5,700	∆3,900
(301)	(기타보상금301-12)	·인지프로그램 강사비 70,000원 * 30회 * 6월 ·가족교육 강사비 70,000원 * 2회 * 2분기 ·협력의사 수당 1,372,000원 * 2명 * 7월	=	35,488	△27,440

##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

- 2018. 05. 30. : 치매안심센터 개소
- 규모 및 장소 : 연면적 698.27㎡ (211평), 사우중로73번길 52 래미안프라자 4층(북변동)
- 인력 현황 : 12명[일반직1, 시간선택임기제11명(간호사8, 사회복지사1, 작업치료사 2)]
- 2019, 09, 23. : 북부보건과 치매관리팀 신설로 북부 5개 읍면 치매관리사업 전담 추진

#### O 향후계획

- 치매환자 조기발견, 등록관리,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
-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
- 치매관리 지역특화사업, 치매예방교육, 치매인식개선 홍보활동 강화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· 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 : 8,969명 / 환자 등록 관리 : 1,464명, / 진단감별검사 : 318명 ·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: 681명 /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: 6종/904명/2,683건 · 치매노인 실종예방 : 배회인식표 발급 142명 / 지문등록 : 171명 · 경증치매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: 120회(976명) · 정상군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: 62회(790명) ·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: 6,310명 · 치매인식개선 :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및 치매 파트너 양성(1개소 / 781명) ·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: 휴먼시아 양곡8단지(프로그램 19회/370명)	
2019년	<ul> <li>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: 12,092명 / 환자 등록 관리: 2,006명, / 진단감별검사: 696명·310명</li> <li>· 치매치료관리비 지원: 826명 /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: 11종/1,003명/12,430건</li> <li>· 치매노인 실종예방: 배회인식표 발급 390명 / 지문등록: 336명</li> <li>·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: 36회/403명(실인원:28명)</li> <li>· 정상군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: 138회(1,809명)</li> <li>·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프로그램: 126회(1,158명)</li> <li>·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: 8,683명 · 치매가족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: 2회/25명(실인원:25명)</li> <li>· 치매인식개선: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및 치매 파트너 양성(1개소/1,006명)</li> <li>·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: 하성면 전류리 (프로그램 26회/464명)</li> </ul>	

2020. 6월말	·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: 1,302명/ 환자 등록 관리: 1,314명/ 진단감별검사: 97명·87명 ·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: 862명/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: 11종/572명/3,202건 · 치매노인 실종예방 : 배회인식표 발급 49명/ 지문등록: 44명/ 배회감지기 지원: 4명 ·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: 40회/447명(실인원: 29명) ·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: 1,037명 · 치매가족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: 2회/25명(실인원: 25명)	
-----------	---	--

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8년	345,954	284,910	0	61,044	
2019년	609,135	489,597	0	119,538	
2020년 6월	329,519	103,282	0	226,237	

부서명	보건사업과	치매관리팀장 이순연	담당자	보건6급 이순연	전화	5032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65세이상 고혈압, 당뇨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(Р - 210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량: 2,400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고혈압, 당뇨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으로 지속적 치료를 도모하여 합병증예방과

노인 만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

#### 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2020년 예산액					2019년 교사 대비	,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108,000	86,400	104,400			Δ18,000	△21,60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비	108,000	86,400	104,400			Δ18,000	Δ21,60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코로나-19 대응단계가 '심각'으로 격상,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어 보건(지)소 진료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약제비지급액 감소로 인해 감액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	제10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제2항 제7호, 제3항
근거내용	- 제 7호 :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- 제 3항 :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 본인 부담금 약제비는 조제 투약한	l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인 고혈압, 당뇨환자의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_	-	-	-	-

- O 가족지지체계 감소와 경제력 미약으로 적기 적절한 치료관리가 어려운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대상 혈압, 당뇨약제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지속적 치료 유도로 합병증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
- O 만 65세 이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고혈압·당뇨병 질환자, 30일 기준 각 질병 당 3,000원 지원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비고
65세이상 고혈압, 당뇨 본인부담약제비지원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고혈압,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= : 3,000원*2,400명*12개월	86,400	Δ18,000

#### □ 사업 추진계획

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1. : 65세 이상 고혈압,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수립

- 2020.01.~2020.12. : 약국 청구자료 심사 및 약제비 지급

- 2020.12. : 65세 이상 고혈압,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65세 이상 고혈압,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: 3,025명/ 13,030건	
2019년	65세 이상 고혈압,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: 2,992명/ 11,341건	
2020년	65세 이상 고혈압,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: 2,121명/ 4,630건	7.15.일까지 추진실적

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8년	115,200	112,706		2,494	
2019년	108,000	107,695		305	
2020년	104,400	48,650		55,750	7.15.일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사업과	방문보건팀장 이경희	담당자	간호7급 최현옥	전화	5033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예방접종사업 (P - 210~211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121,499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 위탁으로 대상자의 편의 증대

및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2020년 예산액				2019년 교사 대비	,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48,600	99,780	49,960	-	-	49,820	51,18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비	48,600	99,780	49,960	-	_	49,820	51,18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 시행 시 소요되는 예방접종 시행비(예진비등 부대비용) 발생
- O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가 3가(A형 바이러스 2가지, B형 바이러스 1가지)→ 4가(A형 2가지, B형 2가지)로 변경되어 백신비 상승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24조1항, 28조1항
	제24조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통하여 필수예방접종(이하 "필수예방접종"이라 한다)을	
근거내용	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 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·보관하여야 하고, 그 내용을 시·도지사 및 보건복지부	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- O 인플루엔자 지자체 사업용 백신 구매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
  - 대상자 : 만19~61세의 김포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(본인) 등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예방접종사업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예방접종 백신구입 - 인플루엔자 백신 : 11,800원*1,000명 -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: 19,010원*2,000명 소계	= =	11,800 38,020 49,820	

##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 01.~ 2020. 02. : 기본계획수립

- 2020. 01.~ 2020.12 : 예방접종 홍보, 예방접종 실시 - 2020.10.~ 2020.12.: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	<u> </u>	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고위험군 B형 간염 유료접종 실적 : 1,553건 - 자체사업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 : 1,555건	
2019년	- 영유아 예방접종 홍보물(어린이 황사 마스크): 1,650개 제작 배부 - 고위험군 B형 간염 유료접종 실적 : 2,181건 - 자체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: 2,000 vial	
2020년	- 고위험군 B형 간염 유료접종 실적 : 306건	7.15일까지 추진실적

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 2018년	(예산액(이철액)	44,760	_	1,990	
	,	,		,	
2019년	48,600	42,660	-	5,939	E450) -17
2020년	49,960	20,685	_	29,274	7.1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심필기	담당자	간호7급 김향숙	전화	5484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국가예방접종 실시 (P - 211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242,829건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 발생 시 합병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 및

감염병 예방,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n) =
구 분	1 (1)		계 본예산 1회추경 2회 추경 3회 =C+D+E+F) (C) (D) (E) (	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	
계	5,918,631	8,153,994	7,207,089	98,123		848,782	2,235,363	
국 비	2,959,315	4,076,997	3,603,545	49,061		424,391	1,117,682	
도 비	887,795	1,223,100	1,081,064	14,718		127,318	335,305	
시비	2,071,521	2,853,897	2,522,480	34,344		297,073	782,376	·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경기도 감염병관리과-16419호(2020.07.09.)와 관련 하여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

- 기존 대상 : 만65세 이상 어르신, 생후6개월~만13세 소아청소년, 임신부

- 확대 대상 : 만14~18세(중2~고3학생), 만62~64세 어르신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24조1항, 28조1항
	제24조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통하여 필수예방접종(이하 "필수예방접종"이라 한다)을	
근거내용	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· 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·보관하여야 하고, 그 내용을 시·도지사 및 보건복지부	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 <del>술용</del> 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2020.	-	-	-	-	-	-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O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 유행 시, 검사 및 의료자원(병상, 의료인력 등) 부족 예상 되어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O 사업내용

- 사업 기간 : 2020년 10월 ~ 약품 소진 시까지- 수행 기관 : 위탁 민간의료기관 150여 개소

- 지원 수준 : 백신비, 시행비 전액 지원

- 지워 방법

보건소에서 백신 구입 후 위탁 의료기관 약품 배정 → 의료기관에서 접종 후 보건소에서 접종 시행비 지급

#### 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국가예방접종 실시	307-01 의료 및구료비	o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: 22,940명*37,000원	=	848,782	

##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 01. : 사업지침 시달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

- 2020. 01. ~ 2020.12. : 매월 2회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등 지원 실시

- 2020. 01. ~ 2020.12. :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실시

- 2020.12. : 사업 집행 결과보고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<u> </u>		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	-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 : 8,852건	
2018년	- 관내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: 135,660건	
2010년	-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: 214건	
	-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 : 36,852건	
	-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 : 24,352건	
2019년	- 관내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: 119,184건	
2013년	-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: 164건	
	-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 : 39,741건	
	-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 : 741건	
2020년	- 관내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: 79,122건	7.15일까지 추진실적
	-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: 214건	1667

##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7,029,578	6,643,926	_	385,652	
2019년	5,918,631	5,918,619	_	12	
2020년	7,305,212	3,460,934		3,844,278	7.1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심필기	담당자	간호7급 김향숙	전화	5484	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	--

#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(P - 211)

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50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치료포기, 치료지연을 예방하여

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,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ul ¬
구 분	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88,200	46,000	152,832			△106,832	△42,200	
국 비	44,100	23,000	76,416			<b>△</b> 53,416	Δ21,100	
도 비	22,050	11,500	38,208			△26,708	△10,550	
시비	22,050	11,500	38,208			△26,708	△10,55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-2861(2020.07.15.)호, 건강증진과-11220(2020.07.16.)호에 의거 감액
- O '19년 신생아 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및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총 지원 금액 감소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택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	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_	-	-	-	

- O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 출생아로 몸무게 2.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중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한 경우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지원
- O 선천성이상아는 생후 28일 이내에 진단받고 6개월 이내에 수술하여 발생한 의료비 지원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	
미숙아 및 선천성아상아 의료기 자원	307-01 의료및구료비	·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20,000원 * 50명	= 46,000	△106,832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1. ~ 2020.02. : 사업계획 수립

- 2020.02. ~ 2020.03. : 2019년 사업비 정산

- 2020.01. ~ 2020.12. : 사업 홍보, 대상자 상담 및 안내

- 2020.12. : 사업 집행 결과보고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미숙아,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: 119명	
2019년	- 미숙아,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: 79명	
2020년	- 미숙아,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: 43명	7.15일까지 추진실적

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235,212	194,321	-	40,891	
2019년	88,200	52,364	-	35,836	
2020년	152,832	21,928	-	130,904	7.1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심필기	담당자	보건9급 김지선	전화	548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(P - 211~212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75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·치료함으로써 영유이의 건강증진 도모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_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72,600	47,364	57,364			Δ10,000	△25,236	
국 비	36,300	23,682	28,682			Δ5,000	△12,618	
도 비	18,150	11,841	14,341			Δ2,500	△6,309	
시비	18,150	11,841	14,341			Δ2,500	△6,309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-2861(2020.7.15.)호, 경기도 건강증진과-11220(2020.7.16.)호에 의거 감액
- O 2018.10월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'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 검사'가 건강보험 적용(전액 공단 부담)되었고, 보건소는 신생아 입원 중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외래 선별 검사비와 확진검사비만 지원하여 총 지원 금액 감소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
근거내용	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	

## □ 시업성격 및 시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	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_	-	-	-	

##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출생아 중 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지원
- O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시 대사이상 의심의 경우 확진검사를 시행한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
- O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분유 및 치료비 지원

## 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선천성대사이상 확진 검사 : 70,000원*5명 ·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: 250,000원*30명 · 선천성대사이상 조제분유 지원 : 987,850원*10명*4회	= = = = 소계 =	350 7,500 39,514 47,364	△10,000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1.~ 2020.02. : 사업계획 수립

- 2020.02.~ 2020.03. : 2019년 사업비 정산

- 2020.01.~ 2020.12. : 사업 홍보, 대상자 상담 및 안내

- 2020.12. : 사업 집행 결과보고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<u> </u>	<u> </u>	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의료비 지원(2,667명/30건)	
2019년	-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(1명/1건) -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(29명/37건) -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 조제분유 지원(7명/28건)	
2020년	-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(0명/0건) -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(1명/1건) -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 조제분유 지원(9명/20건)	7.15일까지 추진실적

##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90,032	89,934	_	98	
2019년	72,600	62,369	_	10,231	
2020년	57,364	18,377	-	38,987	7.1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 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심필기	담당자	보건9급 김지선	전화	5487
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(P - 212)

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: 연중 O 위 치: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671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도와주며 경제적

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극복효과 달성

#### 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420,000	440,000	420,000	98,000		△78,000	-	
국 비	210,000	220,000	210,000	49,000		△39,000	-	
도 비	105,000	110,000	105,000	24,500		△19,500	-	
시비	105,000	110,000	105,000	24,500		△19,500	-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-2709호(20.07.08.), 경기도 건강증진과-13659(20.08.25)호에 의거 일괄 간액

#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 제1항, 제2항			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			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・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_	-	-	-	-	-

- O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대상 체외 · 인공수정,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
- O 체외수정(신선배아1~7회, 동결배아 1~5회) 40~110만원, 인공수정(1~5회) 20~30만원 지원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	격		비고
년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8 1 8 1 8 1 8 1 8 1 8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인공수정 시술비 : 200,000원 × 400명 · 체외수정 시술비 : 600,000 × 600명	=	80,000 360,000	
	1		소계 =	440,000	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- 2020.01. : 사업계획 수립

- 2020.01.~ 2020. 12. : 매월 신청자 접수 및 시술비 지급, 홍보

- 2020.12. : 사업 집행 결과보고

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	<b>-</b>	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난임시술비 지원 (체외수정 541건/인공수정 291건)	
2019년	- 난임시술비 지원 (체외수정 579건/인공수정 235건)	
2020년	- 난임시술비 지원 (체외수정 410건/인공 <del>수</del> 정 112건)	20.7월15일 기준

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174,000	173,984		16	
2019년	420,000	347,329		72,671	
2020년	580,000	347,401		232,599	20.07월 15일 기준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심필기	담당자	간호6급 심필기	전화	548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(P - 212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12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선천성 난청 조기발견으로 언어·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

후유증 최소화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29,200	4,000	20,851			△16,851	△25,200	
국 비	14,600	2,000	10,425			△8,425	△12,600	
도 비	7,300	1,000	5,213			△4,213	△6,300	
시비	7,300	1,000	5,213			△4,213	△6,30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-2861(2020.07.15.)호, 경기도 건강증진과-11220(2020.07.16.)호에 의거 감액
- O '18.10월 난청 선별검사 2종(AOAE, AABR)이 건강보험 적용(전액 공단 부담)되어 보건소는 신생아 입원 중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외래 선별 검사비와 확진검사비만 지원하여 총 지원 금액 감소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3조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_	-	-	-

- O 신생아 출생 후 입원 중 청각선별검사 받지 못하여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
- O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로,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고
신생아 난청 조기진단	307-01 의료및구료비	·신생아 청각 선별·확진 검사비 지원 : 42,800원 * 10명 ·신생아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: 1,310,000원 * 2명 ·신생아 난청 위탁관리비 : 952,000원	= =	428 2,620 952	△16,851
		소계	=	4,000	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1. : 사업계획 수립

- 2020.01.~ 2020. 12. : 매월 신청자 접수 및 시술비 지급, 홍보

- 2020.12. : 사업 집행 결과보고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 : 468명	
2019년	-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(급여화 이전 쿠폰 지원): 55명(2018년 미지급분 포함) -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(급여화 이후): 1명 - 보청기 지원: 0명	
2020년	- 난청 선별검사비 지원(급여화 이후): 1명 - 보청기 지원 : 0명	7.15일까지 추진실적

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15,468	15,431	-	37	
2019년	29,200	2,215	-	26,985	
2020년	20,851	976	-	19,875	7.1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심필기	담당자	보건9급 김지선	전화	548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(P - 212)

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130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치료·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

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2020년 예산액				2019년 예사 대비		
구 분	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68,000	52,000	72,000			△20,000	△16,000	
국 비	34,000	26,000	36,000			△10,000	△8,000	
도 비	17,000	13,000	18,000			△5,000	△4,000	
시비	17,000	13,000	18,000			△5,000	△4,000	
기 타								

#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-2805(2020.07.13.)호 및 경기도 건강증진과-11107(2020.07.14.)호에 의거 감액
- O 지원 항목 중 상급 병실료 지원 제외로 지원 금액 감소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_	_	-	-

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O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임산부중 조기진통분만시 과다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종으로 진단 받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% 지원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	307-01 의료 및 구료비	·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: 400,000원 * 130명 = 52,000	Δ20,000

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1.~ 2020. 3. : 사업지침 시달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

- 2020.1.~ 2020.12 : 매월 신청자 접수 및 의료비 지급, 홍보

- 2020.12. : 사업 집행 결과보고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<u> </u>	<u> </u>	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(44명)	
2019년	-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(150명)	
2020년	-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(117명)	7.15까지 추진실적

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73,680	25,220	-	48,459	
2019년	68,000	47,643	_	20,356	
2020년	72,000	26,568	-	45,431	7.1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#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(P - 212~213)

#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750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

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,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2020년 예산액			2019년 예사 대비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308,000	240,539	277,539			△37,000	△67,461	
국 비	154,000	120,269	138,769			△18,500	△33,731	
도 비	77,000	60,135	69,385			∆9,250	△16,865	
시비	77,000	60,135	69,385			△9,250	Δ16,865	
기 타								

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경기도 건강증진과-6841(2020.04.29.)호에 의거 일괄 감액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_	_	-	_

- O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
- O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장애인 가구,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세분유 지원(2020년 확대)
- O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,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
- O 기저귀: 64천원/월, 조제분유: 86천원/월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비고
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저소득층 가지귀 조제분유 지원 : 320,718원 * 750명 =	240,539	△37,000

#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1 ~ 2020.02. : 사업계획 수립

- 2020.02. ~ 2020.03. : 2019년 사업비 정산

- 2020.01 ~ 2020.12. : 사업 홍보, 대상자 상담 및 안내

- 2020.01. ~ 2020.12. : 사업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및 관리

#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(505명)	
2019년	-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(325명)	
2020년	-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(622명)	7.15일까지 추진실적

#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251,580	242,421	-	9,159	
2019년	308,000	170,278	-	137,722	
2020년	277,539	163,368	-	114,171	7.1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심필기	담당자	보건9급 김지선	전화	548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출산장려사업 운영 (P - 213)

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3,374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저출산·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적극적인

출산장려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_	2019년			2020년 예산액			२०१०७ व्योधी- सीमी	_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807,955	1,029,526	760,124			269,402	221,571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비	807,955	1,029,526	760,124			269,402	221,571	
기 타								

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기존 첫째 둘째아 5만원, 셋째아부터 100만원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을 「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(2020.03.25.)으로 2020.07.01. 출생아부터 둘째아 이상 100만원으로 지원 금액 확대

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	제3조
근거내용	제3조(지원내용) 김포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.)은 예 지급할 수 있다. 2. 출산축하금 4.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	

#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	사	전절차 이행여	부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20	-	-	-	-	-	-

#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O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(기존에 출생신고 된 4세 미만 대상) 및 출산축하금 지급

(단위 :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비고
출산장려사업	301-12 기타보상금	· 출산축하금 지급(첫째아) : 50,000원 × 1503명 · 출산축하금 지급(둘째아 이상) : 1,000,000원 × 791명 · 신생아 보험료 지원(1,080명) - 16.08.09~17.08.08출생아 (4세) : 77,885원 × 281명 = 21,885,685원 - 17.08.09~18.08.08출생아 (3세) : 111,210원 × 245명 = 27,246,450원 - 18.08.09~19.08.08출생아 (2세) : 165,900원 × 257명 = 42,636,300원 - 19.08.09~20.06.30출생아 (1세) : 238,685원 × 300명 = 71,605,500원	75,150 (△74,850) 791,000(중 431,000) 163,376 (△86,748) 1,029,526	중 269,402

※ 20.07.01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중단(20.3.25. 조례 개정)

#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1.~ 2020.02. : 사업계획 수립

- 2020.02.~ 2020.03. : 2019년 사업비 정산, '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' 개정

- 2020.01.~ 2020.12. : 사업 홍보, 대상자 상담 및 안내

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		
2018년	* 출산축하금(첫째, 둘째아) : 2,464명/ 123,200천원 * 출산축하금(셋째아 이상) : 274명/ 274,000천원 * 신생아 건강보험 :1,407명/ 231,581천원			
2019년	* 출산축하금(첫째, 둘째아) : 2,549명/127,450천원 * 출산축하금(셋째아 이상) : 289명/ 289,000천원 * 신생아 건강보험 : 1,357명/ 238,017명			
2020년	* 출산축하금(첫째, 둘째아) : 1,277명/ 63,850천원 * 출산축하금(셋째아 이상) :126명/ 126,000천원	7.15일까지 추진실적		

#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 연도
 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
 집 행 액
 다음연도 이월액
 집행잔액
 비고

연 도	예산연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828,500	628,781	_	199,719	
2019년	807,955	654,467	-	153,487	
2020년	760,124	189,850	-	570,274	7.1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심필기	담당자	보건9급 김지선	전화	5487	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	--

# 임신축하금 지원 (P - 213)

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O 사업규모: 4,100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임신축하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및 가정경제부담 경감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	2019년		. 2019년 예사 대비		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-	2,050,000	1,500,000			550,000	-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비	ı	2,050,000	1,500,000			550,000	_	
기 타								

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자체사업 예산 편성
- 김포시 거주 180일 이상 임부 및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임부에 한해서도 출산 후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
- O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
- 추계내용 : 6월 기준 지원자 수 2,421명(2019년 임산부 포함), 월평균 약 280명 지원 예상

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	제5조
근거내용	제5조(지원기준)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신·출산축천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9 1. 임신축하금 : 50만원 2. 출산축하금 :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 <개정 2020.3.25	.9.23., 2020.3.25.>

### □ 시업성격 및 시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 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20.	-	-	_	-	-	-

#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저출산 시대의 임신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
- O 임신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
- O 임신 축하금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		
임신축하금 지원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· 임신축하금 : 500,000원*1회*1,100명	=	550,000	

### □ 사업 추진계획

### 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1.~ 2019.12. : 2020년 본예산 편성 및 지역화폐 연계, 사업홍보

- 2020.01.~ 2020.12. : 대상자 접수 및 임신 축하금 지급

- 2020.12. : 사업 집행 정산실시

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- 임신축하금 지급에 관한 국가 및 도내 중복지급 사업 현황파악( 국민행복카드 임신부 50만원지원, 타시군 상품권 및 현금지급 등)	
2019년	- 2019. 1. 13. :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- 2019. 1. 14. : 임신축하금 지원계획 결재 - 2019. 1. 16.~ 4.30. :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사전컨설팅 요청 및 협의 완료 - 2019. 5.1. ~ 7.30. :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조정 및 입법예고(여성가족과 협의) - 2019.8.13. :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원안가결(여성가족과 협의) - 2019. 9. 2 ~ 9. 11 : 제195회 임시회 조례개정안 상정(여성가족과)	
2020년	- 임신축하금 지원 : 2,421명 - 임신축하금 예탁 현황 : 1,500,000,000원	7.15.기준

### O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1,500,000	1,500,000	_	0	7.15.기준

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심필기	담당자 간호6급 임은영	전화	5482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	------

- 794 -	-
---------	---

#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**사 업 설 명 서**

# 북부보건과

_	796	-
---	-----	---

# (모바일 헬스케어사업 (국비)) (P - 216)

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: 2020년 6월 ~ 12월 O 위 치: 통진읍 김포대로 2225, 통진메디컬타워 4층

O 사업규모: 만성질환 유소견자 30대 ~ 60대 지역주민 170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보건소 방문으로 운영하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언제, 어디서나 편리한 시간에 모바일을

활용한 코칭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	2019년	2020년 예산액					2019년 예사 대비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	43,780		28,500		15,280		
국 비		21,890		14,250		7,640		
도 비								
시비		21,890		14,250		7,640		
기 타								

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2020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국고보조금 3차 추경에 따른 변경내시(경기도 건강증진과 -10876(2020. 7. 9.)
- O 인력 1명 추가 및 사업대상 확대(대상자 기존120명 → 170명)

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민건강증진법	제19조(건강증진사업등)
근거내용	제19조(건강증진사업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②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권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시1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. 영양관리 3. 구강건강의 관리 4.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.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·연구 6.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	한다.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

#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	
신규	'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	상■	자본□							
자체	재원□	보조재원■							

#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기간제 근로자(운동처방사) 채용으로 모바일헬스케어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강상담, 운동교육, 영양식단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콘텐츠 제공(영양사 기 채용, 간호사 북부보건과 기존 인력으로 구성)
- O 비대면 건강증진 사업으로 기존 대상자 120명에서 50명 추가 확대

### 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	)		비고
	101-04	o 모바일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(영양사) · 기본급 80,000원 * 167일 · 주휴수당 80,000원 * 35주 · 유급휴일수당 80,000원 * 11일 · 정액급식비 130,000원 * 8월 · 명절휴가비 500,000원 * 1명 * 1회 · 4대 보험료 18,580,000원 * 13%	= 2 = 1 = 1	,360 ,800 880 ,040 500 ,415	20,995 (1회추경)
모바일헬스케어 사업(국비)	10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o 모바일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(운동처방사) · 기본급 80,000원 * 64일 · 주휴수당 80,000원 * 13주 · 유급휴일수당 80,000원 * 6일 · 정액급식비 130,000원 * 3월 · 명절휴가비 500,000원 * 1명 * 1회 · 4대 보험료 7,530,000원 * 13%		,120 ,040 480 390 500 979	8,509
	201-01 사무관리비	ㆍ체중계, 활동량계, 운동소모품 등 5종	= 9	,306	9,306 (1회추경 7,080)
	301-09 행사실비지원금	· 오픈강좌 다과(염도쿠키 등) 구입 : 212,500원 * 2회	=	425	425 (1회추경)
	201-01 의료및구료비	o 혈압, 혈당, 고지혈증 등 검사 소모품 6종	= 4	,545	4,545

### 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
- 2020.05 ~ 06 : 사업 홍보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(1명)

- 2020.07 : 사업 대상자 검진 및 선정

- 2020.09 :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및 대상자 추가 모집- 2020.07 ~ 2020.12 : 신규이용자 서비스 등록 및 제공

- 2020.12 : 사후 검진 및 설문조사, 사업평가

부서명 북부보건과 보건관리팀장 박찬옥	담당자 간호6급 손정원	전화	4172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	------

# (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) (P - 217)

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25, 통진메디칼타워 4층

O 사업규모: 5개 읍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25개소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성과 체력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유지

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	2019년		2020년	2010년 에서 대비 조가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)	본예산 (C)	2회추경 (D)	3회 추경 (E)	2019년 예산 대비 <i>증</i> 감 (B-A)	비고
계		750	79,500	△21,250	△57,500		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비		750	79,500	△21,250	△57,500		
기 타							

### □ 예산 증감사유

O 코로나-19 관련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 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 반납

#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	사	전절차 이행여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O 청춘드림 체조마을 사업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에 모이는 단체 운동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 대상 사업에 대한 전면 중단에 따른 강사료 반납

## 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	301-12 기타보상금	·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 강사비 전액 삭감 = 0	△57,500

부서명 -	북부보건과 건	강생활팀장 이석창	담당자	건강생활팀장 이석창	전화	4181
-------	---------	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# (북부권 치매관리체계 구축) (P - 217)

### 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연중 O 위 치 : 통진읍 김포대로 2225 통진메디칼타워 4층

O 사업규모 : 북부권 5개읍 · 면 60세 이상 주민 23,001명

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: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환자와 가족의

삶의 질 제고

### O 예산요구 현황

(단위: 천원)

	2019년		2019년 교사 대비					
구 분	<b>2019년</b> 예산액 (A)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2019년 예산 대비 증감(B-A)	비고
계		168,948	225,606	△6,000		△50,658		
국 비		135,158	180,484	△4,800		△40,526		80%
도 비		5,069	6,768	△180		△1,519		3%
시비		28,721	38,354	△1,020		∆8,613		17%
기 타								

#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O 道 건강증진과-11674(2020.7.22.)호 2020년 치매안심센터 국·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
- O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-285(2020.1.28.), 道 건강증진과-1644(2020.1.29.)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치매관리사업 운영자제 권고로 비대면 사업 추진.

#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치매관리법	치매관리법 제3조
근거내용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"치매관리사업"이라 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	

#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	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・출자 의회의결	
경상■	자본□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2019.10월	_	-	<u>-</u>	-	_	-	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O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-1808(2020.7.13.), 道 건강증진과-11674(2020.7.22.)호에 의거 2020년 치매안심 센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
- O 치매조기검진·치료비지원·예방관리·교육·홍보·치매인식개선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		비고
	사무관리비	· 사업 차량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· 인지프로그램 및 안심마을 운영 등 ·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	=	70,050	△22,460
	공공은영비	· 관용차량 유류비 및 조기검진 우편요금	=	1,700	△7,700
	행사운영비	· 행사, 프로그램 운영	=	0	△2,300
북부권	국내여비	· 치매 사업추진 여비	=	10,080	
치매관리체계 · 구축	행사실비지원금	·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1,000원 × 17명 × 200회 · 가족카페 운영 50,000 × 4월 · 행사다과 및 급식비 150,000 × 2회	=	3,900	△4,000
	기타보상금	· 인지프로그램 강사비 70,000 × 19회 × 5월 · 협력의사 수당 1,372,000 × 1명 × 8월 · 단기쉼터 송영서비스 운임 400,000 × 2대 × 6월	=	22,426	Δ14,198
	의료및구료비	· 조호물품(성인용 기저귀 등 12종) 및 검사 소모품	=	60,792	

### 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O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
- 2020. 01 : 사업계획서 수립

- 2020. 01 ~ 12 : 치매 조기검진, 환자 등록관리, 예방프로그램 및 1: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사업 운영

2020. 11 : 정부합동평가 자료 제출2020. 12. :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

#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### O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: 546명 / 환자 등록 관리: 769명, / 진단감별검사 : 43명·12명 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: 20명 /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: 18종/131명/444건     치매노인 실종예방 : 배회인식표 발급 12명 / 지문등록 : 10명    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: 36회 / 86명     정상군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: 12회 / 168명    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: 500명    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: 하성면 전류리 (프로그램 8회/123명)	9.23 ~ 12.31 실적
2020년	<ul> <li>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: 286명 / 환자 등록 관리: 791명, / 진단감별검사: 40명·8명</li> <li>· 치매치료관리비 지원: 54명 /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: 9종/332명/1,292건</li> <li>· 치매노인 실종예방: 배회인식표 발급 25명 / 지문등록: 26명</li> <li>·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: 3회 / 8명 / 19명(연인원)</li> <li>·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: 199명</li> </ul>	7.15.현재

부서명 북부보건과 치매관리팀장 김춘숙	담당자 의료기술6급 김춘숙 전화	4201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